

[경산]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경산분소에서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8. 26.
동북지방통계청장

1 채용 인원 및 계약 기간

응시기관	채용 구분	채용 인원	계약 방법	계약기간	관할구역
동북지방 통계청	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	2명	근로계약	2025.9.9. ~ 2025.12.31.	경산분소 관할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

※ 위 내용(계약기간 및 채용일정 등)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 담당 업무

구분	주요 담당업무
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/근로계약)	· (경산분소)농업통계부문 전반 현장조사 업무 수행 · 작성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입력 · 불응 조사대상처 설득 · 기타 조사관련 현안 업무 처리 및 사무 지원 등

※ 위 내용(담당업무)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로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~18시) 근무
- 보수: 채용일수(주휴 및 유급휴일 포함) X 일급(80,240원/1일 기준)
- ※ 복무일반: 기간제근로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법령 및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반사항을 따르되, 해당사업별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준수함.

4 응시 자격 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**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**

5 채용 방법

- 1차 서류전형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 - 자기소개서 내용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
- 2차 면접전형 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○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

- 최종점수가 높은 자
-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-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 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 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	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
	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	-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
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
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 심사 일정

- 서류전형(1차) 심사: 2025. 9. 4.(목) 11:00 ~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 공고: 2025. 9. 4.(화) 17시 이후
- 면접전형(2차) 심사: 2025. 9. 8.(월) 10:00~
- 최종합격자 공고: 2025. 9. 8.(월) 16시 이후
 -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>) 공지사항에 공고 및 개별연락
- 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업무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7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8. 27.(수) ~ 2025. 9. 2.(화) 18:00까지
- 모집공고
 - 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>) 채용정보 공지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
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	박유리	대구시 북구 동암로 64 (동북지방통계청 샘빛관 1층)	전화: 053-609-6593 메일:haveitover@korea.kr

*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필수

○ 접수방법

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- 방문접수: 평일 9:00 ~ 18:00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모두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계약서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 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금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
8 제출 서류

- (필수)응시원서 1부[붙임1], 자기소개서 1부[붙임2]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[붙임3]
- (필수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이중취업 확인용)
- (선택)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[붙임4]
- (선택)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5]
- 추가 서류제출(해당자에 한함)
 - ※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

<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>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[붙임4](선택사항)
 - 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(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국가유공자확인원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)
 - 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(스캔하여 첨부 등) 할 수 있음

※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9 유의 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
【붙임 5】 (해당자만 제출)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동북지방통계청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